

# 『구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』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### 2. 제안이유

-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특별회계로 관리 운영함으로써
- 기금관리의 투명성과 사업추진의 효율성 확보하기 위함.

### 3. 주요내용

-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·세출 구조에 관한 사항(안 제2조, 제3조)
- 특별회계의 예산편성·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특별회계의 예산의 일반회계 전용금지(안 제5조)
- 특별회계의 예비비 계상(안 제6장)

### 4. 참고사항

-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
-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지침

#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특별회계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기금관리의 투명성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지침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서,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·세출 구조에 관한 사항(안 제2조, 제3조)
- 특별회계의 예산편성·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특별회계의 예산의 일반회계 전용금지(안 제5조)
- 특별회계의 예비비 계상(안 제6장)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법의 목적에 부합토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.

○ 조례안의 내용이,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,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